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2431 |
|----------|------|

2022년 6월 15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6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1. 제안이유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성별영향평가(안 제2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방법

- 특정성별영향평가 긴급 실시의 경우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반영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 위원회 심의·조정 내용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의회에서 추천하거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 6명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마. 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대리, 위원장의 회의소집

-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안건 관련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바. 간사(안 제7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성별영향평가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함

사. 운영세칙 등(안 제8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31호로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성별영향평가’란 법령·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¹⁾
-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도를 기준으로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는 총 29,395건의 법령·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

1)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여 이 중 약 11%인 3,373건에 대해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²⁾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법령·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 구분 | '13 법령 | '14 | | '15 법령 | '16 법령 | '17 법령 | '18 법령 | '19 법령 | '20 법령 | 비고 |
|-----|-----------|-----|----|-----------|-----------|-----------|-----------|-----------|-----------|----|
| | | 법령 | 사업 | | | | | | | |
| 건 수 | 18 | 8 | 20 | 24 | 19 | 16 | 24 | 24 | 36 | |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교육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되었는바, 입법취지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서³⁾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여성가족부, 2020.8.)

3)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 제3조 ~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서⁴⁾ 위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특히 안 제2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긴급 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시급할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⁵⁾

안 제2조제3항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법령·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는바, 안 제2조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기타 의견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하면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본조신설 2016. 12. 20.),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본조신설 2015. 2. 3.).
- 다만 동 조례의 제정 시기와 관련하여 이미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상위법의 개정이 2015년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제정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상위법령의 제·개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입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각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 연번 | 조례명 | 제정일 |
|----|----------------------|---------------|
| 1 |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9. 7. 5. |
| 2 |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9. 3. 13. |
| 3 |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21. 4. 5. |
| 4 |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6. 2. 15. |
| 5 |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7. 12. 29. |
| 6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7. 7. 19. |
| 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7. 9. 29. |
| 8 |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9. 12. 26. |
| 9 |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8. 1. 2. |
| 10 |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7. 12. 21. |
| 11 |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7. 8. 11. |
| 1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8. 10. 11. |
| 13 |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7. 7. 31. |
| 14 |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2017. 12. 29. |

-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입법예고 기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해 ‘남녀 갈등 조장, 페미니즘 사상 주입, 성소수자 인권 관련’의 이유로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조례안 [별첨2]), 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규정을 근거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청이 조례개정에 있어 상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은 법적 통일성 측면에서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으나 오늘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성”에 대한 견해는 교육정책 방향은 물론 최근 차별금지법 논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은 교육계 내에서라도 먼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교육혁신과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담당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